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재갱신으로 인한 재계약 시 인증 유효기간으로도 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고,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수급자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센터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따손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급여 비용 -

- 매년 1월 필요한 재가급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90분 이상	34,120	150분 이상	50,640	210분 이상	63,530
60분 이상	25,320	120분 이상	43,430	180분 이상	57,020	240분 이상	70,080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 비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2. 본인부담금

-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나.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 다.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60% 감경)
-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40% 감경)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나.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나. 수급자와 관련된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다.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라.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마.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4.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5.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8. 계약 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한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횟수나 시간이 변경되었을 때)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다.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수는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후 절차에 의하여 변경한다. 이 경우 변경 전 수가계약에 의한 이용자(재가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한다.
3.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센터는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제 6 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 (서비스내용 및 업무내용)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가.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나.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병원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

라.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바. 인지관리 지원서비스: 인지활동프로그램

사. 기타: 그 외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센터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2.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